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0. 12.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가. 심사 경과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경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0013호)	송옥주	2020. 6. 1.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0. 9. 1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 론을 거쳐 환경소위원회 회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2505호)	장철민	2020. 7. 30.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2020. 9. 2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 론을 거쳐 환경소위원회 회부

나.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0. 12. 1.)에  
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  
382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20. 12. 3.)에  
서 이를 심의·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는 자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 화재에 취약한 폐기물을 위탁받은 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던 중에 발생한 폐기물 화재가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여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 현행법은 제8조제1항에서 폐기물의 투기 금지 규정을 두면서 지정장소 외 투기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으나, 지정된 방법을 위반한 투기에 대해서는 이를 단속할 규정이 없음.

이에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에 폐기물 투기의 장소나 설비에 대한 규정에 더하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등 폐기물 투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가능하게 하여 폐기물 투기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시설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8조제1항).

나.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보관 등의 화재예방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5조제9항제4호 신설).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를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25조제9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할 것(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27조제2항제8호 단서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제66조제9호 단서 중 “제25조제9항제4호에”를 “제25조제9항제5호에”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5조제9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보관시설의 허용보관량, 화재발생 위험성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날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p> <p>②·③ (생략)</p> <p>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 ⑧ (생략)</p> <p>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p> <p>1. ~ 3. (생략)</p> <p>&lt;신설&gt;</p>	<p>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 ----- -----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 ⑧ (현행과 같음)</p> <p>⑨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할 것</u></p>

4. 5. (생략)

⑩ ~ ⑰ (생략)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생략)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 7. (생략)

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  
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  
을 위반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에 한정한다.

9. ~ 20. (생략)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략)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5. 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⑩ ~ ⑰ (현행과 같음)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현행  
과 같음)

② -----  
-----  
-----  
-----  
-----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  
-----  
-----  
----- 제5호 -----  
-----  
-----.

9. ~ 20. (현행과 같음)

제66조(벌칙) -----  
-----  
-----  
-----.

1. ~ 8. (현행과 같음)

<p>9.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u>제25조제9항제4호에</u>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p> <p>9의2. ~ 19. (생략)</p>	<p>9. ----- -----. <u>제25조제9항제5호에</u> ----- ----- -----.</p> <p>9의2. ~ 19. (현행과 같음)</p>
---	---